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지원제도 알림

'14년부터는 과수농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공사로부터 매매 또는 임대차 지원을 받아 경영규모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는 하동·남해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1. 신청자격

- 연령 및 영농경력 : 만 55세이하 농업인으로서 과수재배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경영규모 : 과원 경영규모 0.5ha 이상(시설은 0.3ha이상), 만40세 이하는 0.3ha

2. 신청기간 : 2014. 08. 28. ~ 2014. 11. 14까지

3. 지원내용

- 지원농지 : 농어촌지역안의 과수원(과수목, 토지 포함)
- 상환조건 : (매매) 30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연리 2%
(임차) 10년이내 매년 영농 후 상환 (무이자)

4. 신청자 구지서류

-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원부 각1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평가에 필요한 다음의 각 서류(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농과계 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에 한함)
교육훈련 이수실적, 농협 면세유류 관리대장, 경영장부, 브랜드 및 품질인증서, 계약재배, 무농약 재배등 각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055-883-5891)로 문의 바랍니다.